

지하안전평가서 검토 등 업무의뢰 대상기관 공모

「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16조,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등에 따라 지하안전평가서 검토 등 업무의 의뢰대상 기관 지정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해당 업무의 의뢰대상 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서 및 업무운영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2년 11월 30일

국토교통부장관

1. 신청기간 : '22. 11. 30.(화) 13:00 ~ '22. 12. 16.(금) 18:00

2. 신청자격

-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원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
-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
-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

3. 공모 신청방법 및 기간

- (신청방법)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로 등기 우편 또는 이메일(wish90@korea.kr, sajio0131@korea.kr) 제출

- (주소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
- (문의처) 국토교통부 위성화事 044-201-3584 / (FAX) 044-201-5553
박성준主 044-201-3576 / (FAX) 044-201-5553
- (신청기간) '22. 12. 12(월)~12. 16(금)
* 등기 우편은 토·일요일에는 접수받지 않음

4.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

- 신청공문, 참여의사확인서, 지원신청서, 운영관리계획서 등 [붙임]
제출서류 및 운영계획서 목차 참조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
- 국토교통부는 업무의뢰 대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또는 실태조사를
실시하고, 그 결과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보완 및 개선을 명할
수 있음

5. 추진일정 *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

- 업무 의뢰 대상기관 공모 및 신청서 접수 : '22. 11. 30(화) ~ 12. 16(금)
- 서면, 대면평가를 통한 업무 의뢰 대상기관 선정 : '22. 12. 22(목)
- 선정 기관의 운영관리계획 보완 : '22. 12. 23(금) ~ 12. 27(화)
- 업무 의뢰 대상기관 지정·고시 : ~'22. 12 中

지하안전 관리 업무 위탁기관 등 선정 계획(안)

2022. 11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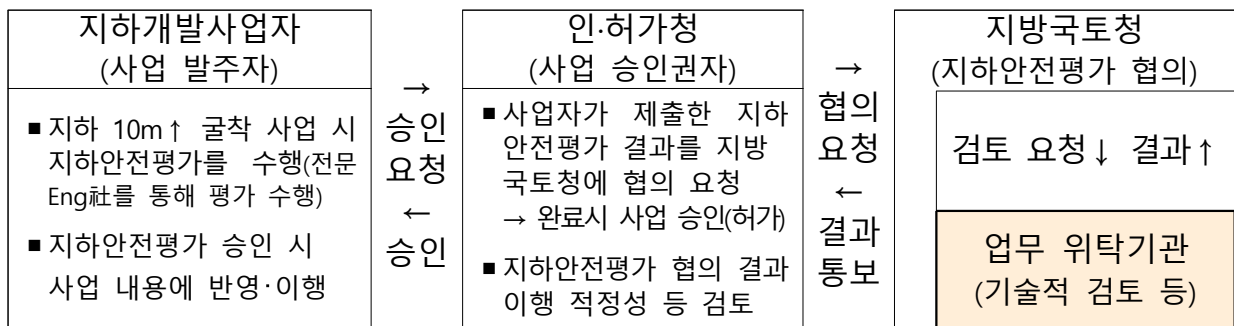
국 토 교 통 부
건 설 안 전 과

목 차

I . 추진배경	1
II . 위탁 대상 업무	2
III . 업무 위탁기관 선정계획	4
IV . 행정사항 및 추진일정	8
 [붙임] 제출서류 및 양식	9

① 지하안전평가서 검토 및 현지조사 의뢰

- **(평가 적정성 검토)** 지하개발사업자가 사업 승인등을 요청 시 제출한 지하안전평가서(착공후조사 포함)의 적정성과 기술적 타당성 등 검토
 - * 평가 항목, 작성방법, 작성기준 등의 적정성 준수 여부, 평가서 내용 타당성 등
- **(현지 조사)** 지하안전평가 내용의 기술적 타당성, 안전확보 방안 적정성 등 검토를 위해 필요시 **현지 조사**(단독 또는 관계기관 합동)
 - * 지하안전법령상 지하안전평가 제도 승인 절차도



② 지하안전 재평가 의뢰

- **(재평가)** 지하안전평가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으로 기존 조치로는 지하안전 확보가 곤란한 경우 국토부 의뢰로 재평가 수행
 - 실시한 재평가 결과는 국토부장관과 인·허가청에 통보(180일 이내)

③ 지하안전평가 전문 Eng사 대행 실적 관리

- **(실적 관리)** 지하안전 전문Eng 社(법적명칭: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)의 지하안전평가 등 대행 실적* 유지·관리
 - * 지하안전평가서,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, 용역계약서 등 업무실적 자료
- **(실적 확인)** 관리중인 지하안전 전문Eng 社의 실적 확인서 발급

4 중앙 지하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운영

- (초기사고 조사) 지반침하 사고 시 초기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개략적인 사고원인 및 사고조사위원회 설치 필요성 등 검토
- (사고조사위 운영) 지반침하 사고 규모·피해 정도* 등을 고려하여, 필요시 중앙 지하사고조사위원회 구성·운영

* (지하안전법 시행령 제37조) ① 지반침하 면적 4m² 또는 깊이 2m 이상, ② 지반침하로 인하여 사망자 또는 부상자가 3명이상 발생시, ③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 가능

5 지하안전정보 시스템 운영·관리

- (시스템 관리) 지하안전 정책의 수립, 안전 관리, 관련 연구·조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의 운영·관리*

* 지하안전관리계획, 지하안전평가서,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관리 등

- (DB 구축 등) 지하안전관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하안전기술에 관한 자료의 수집, DB 구축, 표준화 등

【지하안전정보시스템이 관리하는 항목】

- ▶ 지하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
- ▶ 지하안전평가서등에 관한 사항
- ▶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, 등록사항의 변경신고, 휴업·재개업 신고, 등록말소, 등록취소, 영업정지, 대행실적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
- ▶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
- ▶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및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
- ▶ 중점관리대상의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
- ▶ 지반침하 사고 및 피해현황·통계에 관한 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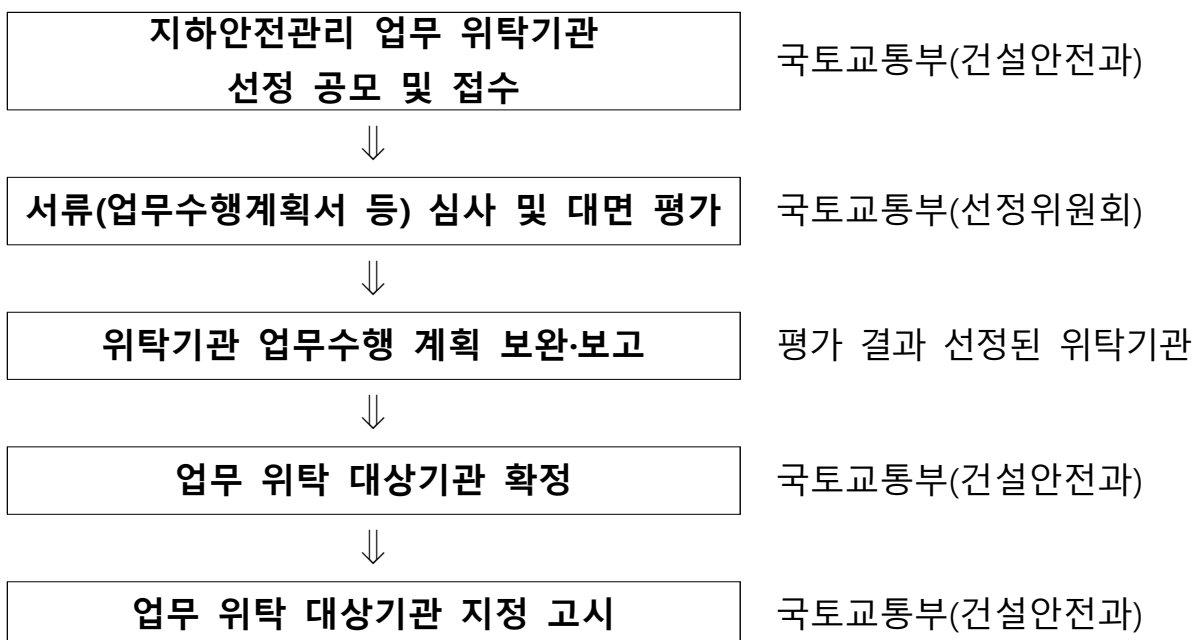
1 선정 개요

- **(선정 기준)** 위탁하는 지하안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·관리할 수 있는 인력, 조직, 기술, 시설 및 장비 등을 보유한 기관
- **(기관 선정)** 업무 성격, 기관 역량 등 고려 위탁기관을 선정하되, 지하안전평가 검토 및 현지조사는 복수 기관 선정

* 대민 업무가 많고, 인력·기술력이 필요하여,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복수 기관 선정하며, 사업 발주기관이 선정될 시 해당 기관의 발주업무 검토는 타 기관이 수행

2 선정 절차

- **(공모)** 일반 공모를 통해 업무수행 희망기관으로부터 신청서 및 업무수행 계획서(운영관리계획 등) 접수
- **(선정)**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모에 신청한 기관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대면평가를 거쳐 업무의뢰 대상기관 선정 및 고시



3 선정 방법

- **(선정위원회)** 지하안전 또는 관련 산업 등의 분야별 전문가 9인 이내로 지하안전 업무 위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
 - **(내부)** 4인(건설안전과장, 시설안전과장, 지방청 건설안전국장(2개청))
 - **(외부)** 2~4인(교수, 연구원 등 외부 전문가)
- **(심사방법)** 선정위원회 위원이 공모 신청기관의 업무수행 능력(인력 확보방안, 기술보유수준 등)을 「선정 평가기준」에 따라 정량·정성 평가
 - **(절차)** ① 서면으로 업무수행 계획서 심사 후, ② 만점의 80% 이상 (80점 이상) 취득한 기관을 대상으로 대면 평가 수행
 - **(선정)** 대면평가 결과 선정위원회 위원별 순위의 최종 합이 가장 낮은 기관*을 지하안전관리 업무 의뢰·위탁 기관으로 선정

* 단, 지하안전평가 검토 및 현지조사 업무는 순위의 합이 가장 낮은 복수 기관 선정

< 업무 의뢰·위탁기관 「선정 평가기준」 >

구 분	평가 지표	주요 평가내용	배 점
기관 역량 평가 (90)	인력·조직	■ (인력) 전문 분야*별 경력자원 보유 현황 * 전문분야 : 지반공학(지하안전평가 검토) ■ (조직) 지하안전관리 업무를 위한 조직 구성 방안	30
	시설·장비	■ 비탈면, 침투해석 등 지반분야 프로그램 활용 경험, 보안설비, S/W 등 보유·활용 역량·이외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·장비 (투입 설비 및 운영방안 첨부)	30
	재정부담 능력 등	■ 해당 기관의 책임능력 및 공신력, 재정부담 능력, 대외 공신력 등	30
기타 (10)	유사 실적	■ 지하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(유사업무 포함) 실적	10
총 계	100		

※ 평가 세부 기준은 붙임2 참고

* 단일 기관만 공모 참여 시, 해당 기관이 「선정 평가기준」 만점의 80% 이상을 취득 한다면, 별도 재공모 없이 해당 기관을 업무 위탁 기관으로 선정

4 업무수행계획 보완 및 업무 의뢰 · 위탁기관 확정

- **(업무수행계획 보완)** 국토부장관은 필요시 선정된 업무위탁 기관에게 운영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요청 가능하며,
 - 선정된 업무위탁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토부장관의 보완 요청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보완하여 보고
 - *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업무위탁 기관이 운영관리계획을 올바르게 보완하지 않을 경우, 위탁기관 선정을 취소하고 재공고 후 평가 진행
- **(위탁기관 확정)** 업무수행계획 보완이 완료되고 추가 보완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업무에 따른 위탁기관 등을 확정하여 고시
 - * 지하안전 업무 위탁기관 지정 기간 : '23.1.1일 ~ '28.1.1일
단, 지하안전 업무 위탁에 대한 정책 등 변경 시 위탁 기간 변경 가능

1. 제출서류

- 신청공문(제안기관 직인 날인)
- 참여의사확인서(양식 1) 1부
- 지하안전평가서 검토 등 업무 의뢰 대상기관 지원신청서(양식 2) 1부
- 지하안전평가서 검토 등 업무 운영계획서 및 발표자료 10부
- 법인인감증명서 1부
- 사업자등록증(고유번호증) 사본 1부
- 인력·조직·시설·장비 보유(계획) 증빙자료 1식

2. 신청서 작성요령

- 공모문 상의 목차에 따라 작성하고, 신청기관의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최대한 자세하게 기술
- 반드시 면수(page)를 기재
- 모든 증빙자료는 지원신청서와 1권으로 합철하고, 별도 목차 작성

3. 운영관리계획서 목차(예시)

- 가. 기관 개요
- 나. 사업목표 및 계획
- 다. 조직구성 및 운영계획
- 라. 세부 운영계획 및 향후 운영확대 방안
- 마. 시설·장비, 재정부담 능력 등
- 바. 유사 실적 등

<양식 1>

참여의사확인서	
명 칭	지하안전관리 업무 위탁기관 신청
신청기관명	
총괄책임자	
지하안전평가서 검토 등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신청서의 내용에 동의하고, 본 사업이 심의를 거쳐 지하안전 업무 위탁기관으로 선정될 시 관련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지하안전관리 업무에 적극 참여할 것을 약속합니다. 2022년 월 일 (기관명) (대표자)_____ (인) 국토교통부장관 귀하	

<양식 2>

■ 지하안전관리 업무 위탁기관 지원신청서				
신청 기관			설립연월일	
대표자		(한글) (한자)	전화번호	
기관 주소				
운영계획서 내용 요약				
담당 부서			담당자 (e-mail)	()
연락처	TEL (핸드폰)	()	FAX	
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 2022년 월 일 신청기관(대표자) _____ (인) 국토교통부장관 귀하				
첨부서류 : 운영관리계획서 10부. 끝.				

붙임 2

업무 의뢰 대상기관 「선정 평가기준」

1

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

구분	평가지표	주요 평가내용	배점	
능력 평가 (90)	인력 조직	·전문분야* 인력 보유 계획 * 지반공학, 토질역학, 구조역학 등 지하안전 관련 학력 또는 인정 경력	10	계량
		·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구성 및 운영 방안	10	비계량
		·관련부서·기관 협력방안	10	비계량
	기술·장비	·비탈면 안정, 침투해석 등 토질 및 지반분야 프로그램 활용 경험	20	비계량
		·보안설비, 데이터 관리 S/W 등 해당기관의 품질보증능력 (위험관리, 진도관리, 보안관리, 문서관리 등 적정성)	10	비계량
	재정부담 능력 등	·해당 기관의 재정부담 능력, 업무 책임능력, 대외 공신력 등 (업무 의뢰를 위한 신뢰도평가)	30	비계량
기타 (10)	유사 실적	·지하안전관리 수행 실적 ·그 외 유사한 업무 수행 실적	10	비계량
총 계	100			

2

계량평가 분야 항목별 평가

○ 계량분야 평가방법 : 전문분야 인력 보유계획에 따라 계량 평가

구분	8명 이상	7명	6명	5명	4명 미만
계량	10	8	6	4	2

3

비계량평가 분야 항목별 평가

○ 비계량분야 평가방법 : 항목별 배점 × 평가점수 ÷ 10

구 분	평가점수				
	매우 우수	우수	보통	다소 미흡	미흡
비계량	10	8	6	4	2
	20	18	16	14	12
	30	28	26	24	22

기 술 능 력 평 가 표

□ 공모명 : 지하안전관리 업무 위탁기관 선정

평 가 항 목		배점	평가등급	평가결과(점수)	비고
합 계		100			
인력 · 조직	·전문분야* 인력 보유 계획 * 지반공학, 토질역학, 구조역학 등 지하안전 관련 학력 또는 경력	10	-		계량
	·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구성 및 운영 방안	10			비계량
	·관련부서 · 기관 협력방안	10			비계량
기술 · 장비	·비탈면 안정, 침투해석 등 토질 및 지반분야 프로그램 활용 경험	20			비계량
	·보안설비, 데이터 관리 S/W 등 해당기관의 품질보증능력 (위험관리, 진도관리, 보안관리, 문서관리 등 적정성)	10			비계량
재정부담 능력 등	·해당 기관의 재정부담 능력, 업무 책임능력, 대외 공신력 등 (업무 의뢰를 위한 신뢰도평가)	30			비계량
유사 실적	·지하안전관리 수행 실적 ·지하개발사업 수행 실적	10			비계량

2022. . .

평가위원 :

(서명)